

상세 자료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18. 8.



법제처



목 차



I. 개요	1
II. 적극적 법령해석	4
1. 의의	4
2. 기준	4
III. 신산업 자율 보장	11
1. 의의	11
2. 추진방안	11
IV. 하위법령 마련	14
1. 의의	14
2.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주요 사례	15
V. 관련기관 협조 사항	22
[참고 1] 법제처 적극행정 지원체계	23
1. 정부유권해석	23
2. 사전입안지원	24
3. 법령기획정비	25
[참고 2]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적극행정 사례	27
[참고 3] 법령해석을 통한 적극행정 사례	31

□ 추진배경

【 '18. 5. 29. 제24회 국무회의 VIP 말씀 】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닌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까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행정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면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므로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 해석을 해야 할 것

- 법령이 국가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 패러다임의 재설계

□ '적극행정'이란?

-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공무원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일하는 봉사자임을 천명
-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 및 탄력성은 시대적 요청
 - 법치행정의 기반아래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선택이 아닌 의무

⇒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 '적극행정 법제'의 필요성

- 환경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
 - 법률 제·개정 절차의 장기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성장 동력 위축

- 시대의 변화와 상반되는 불필요한 규제 양산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초래

○ 법률 과잉현상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세부사항까지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 복잡화와 행정의 경직화 초래

- 예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사항도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경향 증가

○ 소극적 법령해석

- 사후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기술·신산업의 발전 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

⇒ '적극행정 법제'란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

□ 가이드라인의 목적

○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 제공

①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②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 방법

③ 하위법령으로도 규정 가능한 분야 예시

○ 일선 공무원이 소관 법령업무 처리 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히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속하게 해당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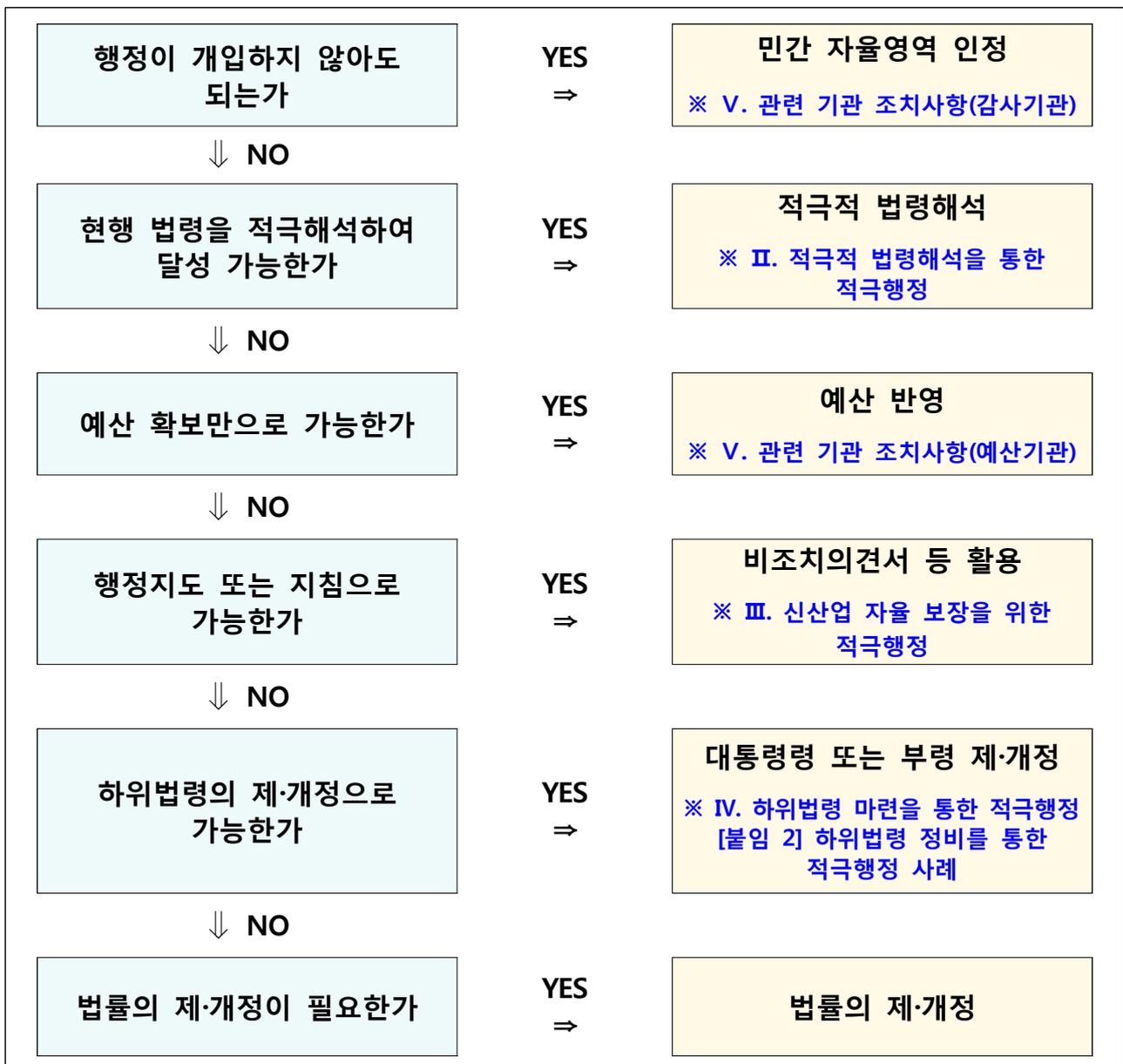
□ **적극행정과 법제처의 역할**

- 정부 유권해석, 사전입안지원 및 법령정비를 통해 각 부처 법제업무 지원 [붙임 1]
- 각 부처의 적극행정 법제를 위하여 법령해석부터 법령입안까지 개별적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가이드라인 활용**

- 공무원 스스로 적절한 조치수준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의 기준 및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실천

<적극행정 법제 실천 흐름도>



1. 의의

- (개념)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시대의 변화,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용어·문장의 상대성, 문언의 의미에 국한할 경우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논리해석^{**}을 적극 활용한 해석
 - * 문리해석: 법령의 문자·용어나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
 - ** 논리해석: 법령의 문자·용어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물의 이치·논리를 도입하여 해석
- (방법) 입법 취지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를 확대해석** 하는 행태 지양
 - 기존 법령에서 예상되지 않았던 분야(예: 신기술·신산업 관련 분야 등)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가급적 가능한 것으로 해석**
- (주체) 1차적으로 **법령 집행 행정기관**,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등 법령에 대하여 정부의 통일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2. 기준

□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 금지

- (해석방향) 규제는 문언대로 엄격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적 가치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
 - ☞ 유추해석, 확대해석 등을 통한 규제의 확대 적용 금지
- (세부기준)

- ▶ 적용대상이 규제 범위 내에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정의 규정이나 사전적 의미 등을 활용하여 엄격하게 해석
- ▶ 적용대상이 규제 범위 내에 있더라도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적 가치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한다면 축소해석하여 적용 배제

○ (사 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공장용지에 설립된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는 취소 사유가 아닌 것으로 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 문언을 엄격해석하여 문언의 범위를 넘는 사항은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규제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회사는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금지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주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

□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 (해석방향) 신기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

○ (세부기준)

- ▶ 적용하려는 사항이 법령 제·개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면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 확인
- ▶ 규제 관련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상 적용하려는 대상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사 례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

(「의료법」 제23조 등 관련)

☞ 신기술 등의 활용이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하는 경우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누출·변조 금지 조치를 전제로 **AI 의료 SW를 클라우드에서 제공시 클라우드를 허용 가능한 '의료기관 외의 장소'로 인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료의 저장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료의 저장이 가능한 장소를 물리적인 장소 외의 장소로까지 확대 해석

□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의 확대 해석

- (해석방향)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게 해석(확대해석)
- (세부기준)

- ▶ 입법취지가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이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확대해석 고려
-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되는지 확인하여 제3자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다면 확대해석 가능

○ (사 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직접적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등 관련)

☞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 법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대해석**

의상자등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자연휴양림등 입장료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국립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 법령(A)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대상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B)에 따른 특정 대상자를 특례 대상자로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B)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특례 적용 대상자에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가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 ☞ 법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고, 법령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 국민의 안전 보장 지향

- (해석방향) 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해당 법령의 적용을 통하여 최대한 안전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석
- (세부기준)

- ▶ 안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넓게 해석
- ▶ 안전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행정 업무 수행 권한 범위 적극적 해석

- (사 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급경사지의 소유자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안전성 확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사용제한·금지 등의 안전조치명령만으로는 붕괴위험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관리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 ☞ 안전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그 범위를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넓게 해석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봄**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관련)

☞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행정 업무 수행의 권한 범위 해석

□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

- (해석방향)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석
- (세부기준)

- ▶ 법령이 사회적 약자 보호규정이란 최대한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고 사회 정의와 공평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석
- ▶ 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 형태, 자격이나 학위 취득 경로 등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해석

- (사 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등이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에도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의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최대한 사회적 약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석**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대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되었던 경력 뿐 아니라 청소년단체에 파견되어 근로한 경력도 인정되는 것으로 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 자격요건이나 인력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다양한 형태의 자격·근로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

□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행정 구현

- (해석방향) 실체적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의 경우 과도한 절차가 되지 않도록 지나친 엄격해석 금지
- (세부기준)

- ▶ 특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이행할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한 방법으로만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금지
- ▶ 특정한 수준으로 절차나 요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확인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해석

- (사 례)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 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 법령 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관리전환을 위한 절차를 거쳤으나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해당 규정에서 사용된 가운뎃점(“·”)의 의미를 불용품의 처분 방식을 예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 관련)

- ☞ 법령 문언에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불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신속 절차 진행을 위하여 그 중 어느 하나를 갖추면 되는 것으로 해석

□ 행정편의적 해석 지양

- (해석방향)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행정편의보다는 국민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법령 해석

○ (세부기준)

- ▶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엄격해석 지양
- ▶ 특정 행위나 서류의 확인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 (사 례)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 ☞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규제 내용이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범위를 국민들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 등 관련)

- ☞ 특정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입증하고자 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1. 의의

□ ‘신산업 자율 보장’이란?

- 법령상 규제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행정기관에 규제 결정의 재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규제 비적용 결정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촉진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해석을 통해 집행을 할 수 있으나, 적용 법령이 없거나 있더라도 새로운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애매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률 제·개정 전에 신산업 분야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유롭고 안정적인 영업수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위한 원동력 마련

2. 추진방안

□ 정부 차원의 선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비적용 원칙 표명

- 선도 신산업에 대한 현행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고, 선도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
 - 해당 부처 또는 부처합동으로 현행 규정에 따른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훈령 또는 고시 등 형태로 표명

□ 비조치의견서 도입

- (의의) 개별 행정기관은 선도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산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신산업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 통지

*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s)

- 규제당국이 현 상황에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법적으로는 '확약'의 일종
- 1936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법령해석상의 분쟁 방지 및 사업자 영업활동에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법률자문의견서 제도'에서 유래
- 현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등 다양한 규제기관에서 활용

- 특히, 선도 신산업 수행 행위로 야기되는 공중에 대한 위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적극적 해석을 통해 비조치의견 통지
-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신산업을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자율규제 사항(공중에 대한 안전 고려 등), 해당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향후 입법조치 계획 등을 안내

- 비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으로 활성화 유도

○ (사 례)

A은행은 보험대리점이 은행의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보험영업을 하려는데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요청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을 허용하고 있지만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모집도 보험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비조치의견을 표명

□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등의 활용

- (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의 적극 활용

※ (감사원) 전담기구 신설, 신산업 분야 감사자제 등 적극행정 면책방안 추진 중('18.2~)

○ (사 례)

공장부지가 40년 전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양분됨**에 따라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용도지역변경(주거→준공업)이 가능한지 사전감사 컨설팅 요청

⇒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용도지역이 변경 가능하도록 컨설팅** (180억 신규투자 및 100여명 고용창출)

□ 신산업 자율보장을 위한 법제처 지원

○ 비조치의견서 도입 지원

- 각 부처가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하고자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입안 지원**

○ 법령해석을 통한 규제대상 여부 확인

- 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의 해석·집행 시 **선도 신산업에 해당 법령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거나 그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해당 신산업이 기존 법령의 규제대상인지 여부 확인**
- * 법령해석 시 선도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수렴

1. 의의

□ 법치행정과 법률유보

- 행정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근거로 발동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행정 영역에 적용
 - 법치주의의 한 구성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둘 것을 요구

⇒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하위법령에 일정 부분 위임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사항**은 위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법률에서 규정**

□ 하위법령을 활용한 적극행정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적으로 국가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만, 대통령 역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짐**
 -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위임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부분 확대 필요**
 - 정부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행적 성격의 사항**을 규율하는 하위법령(집행명령)을 제·개정하여 국민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 필요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우,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750, 판결]

□ 법령체계에 따른 규정사항(예시)

○ 법률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시행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 총리령·부령(시행규칙)

-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 서식·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주요 사례

가 포상금

- (개념)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 또는 어떤 일에 성과를 창출한 자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검토) 행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무관하므로 하위법령의 근거와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 가능

- 부당수급한 자에 대한 반환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규정 적용 가능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 (개념) 국가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검토)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근거 불필요
 - 예산편성, 집행지침을 통해 지원가능

다 시스템 구축

- (개념) 행정기관이 업무수행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국민 또는 관계기관에 단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관리체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검토) 행정기관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단순 행정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무관하므로 하위 법령으로 규정 가능

라 관계기관 간 협조요청

- (개념) 행정기관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또는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인원, 장비 또는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것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검토) 상대방의 의무를 전제하지 않은 협조요청은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개별 법률에 근거 불필요

*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마 자문위원회

- (개념) 행정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방면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검토) 자문위원회는 그 절차가 임의적이고 결정 또는 판단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바 행정지도 또는 권고

- (개념)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

「골재채취법」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 (검토)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고,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사 행정상·재정상 필요조치

「기계설비법」

제12조(세제·금융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검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원론적·확인적 규정이므로 개별 법률에 근거 불필요

아 수수료

- (개념)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경비

「공사채 등록법」

제13조(수수료)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나 공사채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검토)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등가적인 부담이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 (법률 근거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의 이용이 강제(예: 「가사소송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 등에 대한 수수료) 되는 경우
 - 형식상 자유로우나 사실상 강제(예: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 수수료)되는 경우

자 전담기관의 지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검토) 행정기관 업무를 단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또는 센터의 경우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 지정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등과 협약서 체결 시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적시

차 출자 또는 용자

- (개념) ‘출자’란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
 - ‘용자’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 (검토) 출자는 출자하는 주체가 출자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출연과는 달리 엄격한 통제를 요하지 않으므로 개별 법률에 근거 불필요
 - ※ 출자와 출연의 차이: 출자는 출자주체가 출자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불필요하나, 출연은 자신의 재산상 손실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종의 기부행위이므로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법률 근거가 필요
- 용자는 예산만 확보되면 나머지는 일반 대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개별 법률에 근거 불필요

카 시범사업의 실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4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시범지역조성사업, 시범도시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검토) 본격적인 실행에 앞선 검증절차로서 국민의 안전·생명과 무관한 경우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타 우수 사례의 보급·확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확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 ~ 4. (생략)

- (검토) 정책이나 공공사업과 관련된 우수 사례를 보급 및 확산은 행정 주체의 책무에 해당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파 그 밖에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 (증명서의 재발급) 집행적 사항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경우이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도로교통법」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경진대회 등 단순 행사개최) 단순한 행사의 개최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가 아니고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도 아니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닌 교육훈련) 법정의무가 아닌 연수 및 지도사업, 교육훈련의 지원 등은 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청문)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할 수 있으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

「식품위생법」

-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제48조 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3. 제7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 (유효기간 만료의 통지)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이나 갱신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거나 안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음

「지하수법」

-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필요성

- 적극행정 법제는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및 법제업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적극행정 법제를 저해하는 공직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수**

2. 분야별 협조 사항

- 부처 공통
 - 적극행정 법제의 확산을 위한 조직 분위기 쇄신 대책 마련
 -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비조치의견제도 마련 및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등의 활용으로 적극행정 유도
- 기획재정부 등 예산 기관
 - 예산 편성 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배정이 쉽다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과도한 법률 제·개정의 원인
 - 하위법령에 근거한 정책 또는 예산조치만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예산 반영 협조**
 - 보조금·기금 등을 관리하는 부처의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한 사업과 하위법령 또는 정책 집행을 위한 사업을 차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협조
- 감사·징계 등 관계 기관
 -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징계 또는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공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향후 책임질 것이 두려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 가이드라인 및 인사혁신처 사례를 참고하여 **면책기준 현실화 협조**

※ (감사원)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시행 중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징계면책 의무화 시행 중(2018. 5. 30.)
- 법제처
 - 정부 유권해석, 사전입안지원 및 법령정비를 통해 각 부처 법제업무 지원
 - 법령해석부터 법령입안까지 개별적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비조치의견서 도입을 위한 훈령 등 제정 시 입안 지원
 -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 교육, 법제심사와 법령해석을 통한 정착 및 우수사례 확산

[참고 1] 법제처 적극행정 지원체계

1. 정부유권해석

□ 정부유권해석이란?

-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 법제처가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

□ 절 차



○ 안건 접수(법령해석총괄과)

-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07)에서 접수

○ 안건 검토(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질의요지의 명확화, 관련 사실관계 등 질의배경의 파악, 관계 법령의 발견, 대립되는 의견의 정리,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관계되는 해석례, 판례, 행정법 이론, 입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처 검토의견서를 작성

○ **안건 심의**(법령해석심의위원회)

- 법령해석 안건은 위원장인 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

○ **안건 회신**(법제처장)

-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령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신

2. 사전입안지원

□ **법령입안지원이란?**

-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도모하고자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조문화를 지원하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제도

□ **절 차**

- **(신청 주체)** 해당 법령 소관부처 담당자

- **(지원 대상)** 정부제출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부령안,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

- **(신청 방법)** 서면, 시스템 또는 대면

- 서면: 법제지원총괄과로 공문 시행, 메일 송부 (leg.sd@korea.kr)

- 시스템: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안 입안 > 입안지원 요청함 접수

- 대면: 담당자 통화 후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세종청사, 7-1동 704호) 또는 서울법제지원센터*(서울청사, 214호) 직접 방문

* 매 2, 4째주 수요일, 찾아가는 사전입법지원 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 분량과 쟁점이 많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원요청

- 질의 요점을 명확하게 하여 지원요청
- 정책취지대로 법령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설명자료를 충분히 첨부

3. 법령기획정비

□ 법령기획정비란?

- 법령정비는 각종 법령 속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하는 것으로서,
 - 이 중 법령기획정비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 관련되어 개선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정비 분야를 선정하여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동일·유사한 법적 문제를 한꺼번에 정비하는 업무

□ 절 차

○ 정비대상 과제의 기획

- 국정과제, 판례·해석례 분석 등을 통한 자체 발굴
- 국무회의 등에서의 기획정비 지시
- 관계부처의 요청

○ 정비대상 과제의 정비 추진

- 법령전수조사 및 법령안 초안 마련
- 법령안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협의
- 정비대상 법령안 확정
- 정부입법절차 이행(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 규제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국회제출 등)

* 각 절차의 주관부처는 정비대상 과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제처(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와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결정

□ 법령기획정비 사례

- 국무조정실 및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하위법령 일괄정비 실시('18. 5. 28. 공포)

*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18.5.28. 공포)

연번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견인 대행업자의 주차시설 주차대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40대, 시·군은 20대	견인 대행업자의 주차시설 주차대수 기준을 특별시·광역시는 30대, 시·군은 15대로 기준 완화	영업입지 규제완화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별표 1의2)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정해진 바 없음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정함	기업애로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5조)	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목재제품 개념을 한정적으로 열거(제2조),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제45조)	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제2조),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 신기술이 적용된 목재제품 제조업까지 확대(제45조)	포괄적 개념정의 (제2조) 유연한 분류체계 (제45조)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현행 옥외광고물의 분류를 벽면이용간판, 현수막 등 16종으로 제한(제3조)	현수막 등 16종으로만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에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함(제3조)	유연한 분류체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밤, 잣 등 79개 종으로 한정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분류를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인터넷, 서면, 전자우편, 전화로만 획득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를 기존의 방법 외에도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 등 새로운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연한 분류체계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총포·도검 등의 제조업 시설의 기준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	총포·도검 등의 제조업 시설의 기준을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영업입지 규제완화
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대기오염 측정방법을 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방법으로 제한	측정방법 제한을 없애 반도체 방식, 광센서 방식 등 다양한 신기술 이용방법 이용 가능	네거티브 리스트

[참고 2]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적극행정 사례

연번	제명	과제	정비 사례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학교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 의무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다문화가족의 학생 등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의 학생 등으로 하여금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및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2	도로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굴착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u>허가의 기준</u>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 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설 또는 확장한 날부터 3년(보도의 경우는 2년) 이내인 경우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연장 무대 등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u>편의시설의 종류</u>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공연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함
4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u>기준·절차</u>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도심에서 도로 폭 12미터 연접규정을 충족하는 부지가 거의 없는 문제가 있어 호스텔업과 소형호스텔업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도로 연접 기준을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면 되도록 기준 완화함
5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의 <u>구체적인 기준과 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수요자 중심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해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외식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업소 비율이 40% 이상이면 외식업지구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함

6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차상위계층에 대해 미술관 관람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만 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개설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자연취락지구 안에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은 건축할 수 있는 반면, 요양병원은 금지되어 있는바, 설치기준이 유사한 요양병원을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에 농기계 보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가 농수산물 저장 용도로만 허용되어 농업용 창고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농업인의 불편 초래하므로 농업용 기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
9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산업단지의 명칭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직접 규정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임 ➔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하여 탄력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
10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정우체국 직원 유사경력 인정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동일 분야의 유사경력에 대해서 현행 80%에서 100%로 인정범위 확대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벌점 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은 범칙금 부과 근거만 규정 ➔ 교통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해당 범칙행위에 대한 벌점을 병기하여 운전자가 바로 벌점을 확인하고 벌점관리 및 안전운행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함
12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 철거신고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절차 등은 부령으로 위임 ➔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었으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처리기간이 1일이므로 국민편의를 위하여 신고기간을 철거예정일 3일 전으로 연장

1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사·인쇄 사 신고 관 련 보고등 의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은 인쇄사 신고 시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인쇄사 신고 시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정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변경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14	산지관리법 시행령	채석경제성 평가의 방 법·기준 등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은 <u>전문조사기관의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u> ➔ 채석경제성평가 시 시추를 위한 시추공 수는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한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허가신청 면적을 축소할 경우 채석경제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허가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미 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한 이후에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었다면 추가 시추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 사업의 양 도·양수 등 의 신고 정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는 <u>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절차를 부령으로 위임</u>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사업 양수인이 소송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이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과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사업자 에 대한 입 찰 보 증 금 관련 차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되, <u>입찰보증금 면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u> ➔ 법인과 개인 모두 공사업자로 등록 가능하나, 보증금면제는 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어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개인에 대하여도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17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1인 창조기업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u> ➔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1인 창조기업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전문인력 요건을 1명 이상으로 변경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u>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u>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지역농업협동조합만이 개발제한구역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도 가능하도록 개선
19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치원 공동 영양사 배치 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급식 시설, 설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위임 ➔ 영양사가 수행해야 할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 식품의 검수 및 관리 업무 등을 조리사, 교사 등 비전문가가 수행하고 있어 유아들의 영양관리가 어렵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 강화를 위하여, 1회 급식 규모를 반영한 영양사 공동 활용 범위 축소
20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20개 총리령·부령	독학사 등의 차별 폐지를 통해 취업과정에서의 학력차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법은 <u>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인력</u>으로 위임근거를 규정 ➔ 독학사나 학점은행이 정규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정비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규정</u> ➔ 대통령령에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도 임금 및 교육과 승진, 정년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참고 3] 법령해석을 통한 적극행정 사례

연번	법령	질의요지	해석 내용
I.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 지양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 제3호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인 “공장용 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에 해당 토지에 건축한 공장 용도 의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하여 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18-015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타 인에게 임대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 에 해당하지만, 그 공장용지에 설립된 “공 장용도의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는 취소 사유가 아닌 것으로 봄
2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제3항	지방공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주 식회사가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17-0672)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 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 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 봄
3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을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해 야 하는지 여부(16-0134)	교관의 확보방법에 대해 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교관을 반드시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등 상근 인 력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 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받기 위해 예치하거나 소유해야 하는 해당 도시공원 부 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 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 (16-0680)	법령에서 민간공원추진자가 둘 이상인 경 우 반드시 그 중 1명이 단독으로 현금을 예치하거나 부지를 소유할 것 등과 같이 그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현금 예치 또는 부지 소유를 어떻게 분담 할 것인지는 민간공원추진자들 간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봄
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 시행일 전에 선출공고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되는 지 여부(16-0052)	입주자대표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 전에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가 없었던 경우 해당 규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

6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 으로 매입한 산업단지 소재 국유 토 지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18-0236)	법령에서는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 기업체가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대”의 경우 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와 성격이 유사하면서 규제 완화 의 필요성이 더 큰 “매각”의 경우에도 해 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
7	구 경관법 (법률 제12013호) 부칙 제3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규율대상에 기본설 계의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을 체결한 경 우도 포함되는지 여부(18-0054)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 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부칙 적용례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재설계용역”을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안정성 및 관 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강화된 규제가 해당 사안에 적용되지 않도록 함
8	사립학교법 제28조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지 여부(16-0371)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 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 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은 경 영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 유치원 교 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립유치원 을 경영하는 자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사 립유치원을 경영하려는 자의 직업의 자유 를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증 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II. 국민의 편익 증진			
9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 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 에 포함되는지 여부(18-0010)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 기 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공무원 보수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 고 둘째, 셋째 쌍둥이 자녀를 양육한 육 아휴직기간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 직기간으로 봄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수익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대 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사업 이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 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 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17-0358)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재 단의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 하여 학자금대출 원리금 면제사업이 한국 장학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

11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제2호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17-0027)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직접적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
1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18-0364)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
13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업보호구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15-0414)	법령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주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외의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봄
1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18-0001)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다수의 직역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도록 봄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상자 등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국가는 의사상자 등의 입장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17-0258)	의상자 등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자연휴양림등 입장료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국립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봄

Ⅲ. 국민의 안전 확보

1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의 실시 가능 여부(17-038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급경사지의 소유자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안전성 확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사용제한·금지 등의 안전조치 명령만으로는 붕괴위험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관리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봄
17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 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17-036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정 업무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하여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봄

IV.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			
18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고등학교 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이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17-0518)	전문대학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중등교육 이후의 고등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학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로서, 교원의 호봉 획정 시 전문대학도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교로 봄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17-0665)	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봄
2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17-0260)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등이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에도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봄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담인력”에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16-0473)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제외한 업무의 수행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동등하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전문인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
22	저작권법 제33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15-0733)	법령에서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로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일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
2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별표 2 제1호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18-0159)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대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되었던 경력 뿐 아니라 청소년단체에 파견되어 근로한 경력도 인정되는 것으로 봄

V.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행정 구현			
24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18-0100)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영을 단속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봄
25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17-0513)	법령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제원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해당 시·도지사 등이 공고한 내용을 제3자가 다른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시·도지사 등이 각각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고 봄
26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18-0161)	자동차 상속에 관한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
27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와 매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여부(15-0050)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해 처분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관리전환을 위한 절차를 거쳤으나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해당 규정에서 사용된 가운데점(·)의 의미를 불용품의 처분 방식을 예시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봄
28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17-0102)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

VI. 행정편의적 해석 지양			
29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18-0056)	법령의 본칙 규정과 서식 규정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제1호나목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18-0026)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봄
31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7조제2항제 2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여부(17-0680)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와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해제 및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 행정절차상 약간의 시차라도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지정이 불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지역 운용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VII.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32	의료법 제23조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 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이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17-0700)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